

의 정 정 보

2010 - 10호 10. 11

1.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2.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28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74
<참고1> : 6. 2 지방선거 선거비용 수입·지출상황		93
<참고2> : 행복한 책 읽기		97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042)606-5021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2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	23
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	25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5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97호, 2010.10. 1, 제정】

1. 제정이유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인력·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역량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안 제12조 및 제13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관할구역 안의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하고, 개편추진위원회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안 제14조)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라. 시·군·구의 개편(안 제15조)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마. 시·군·구의 통합절차(안 제17조)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추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 대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사. 주민자치회의 설치(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자.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33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인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도록 함.

차.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안 제36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함.

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안 제39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안 제40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체제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2014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

제6조(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5.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등 자치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개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③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4대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개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개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개편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편위원회 소속으로 전담지원기구 및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⑧ 개편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담지원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개편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개편위원회는 개편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 개편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1조(국회의 입법조치) 국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범위

제1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개편

제12조(과소 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제13조(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등) 개편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제14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①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에 실시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절 시·군·구의 개편

제15조(시·군·구의 개편) ①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17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제6조에 따른 개편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④ 개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을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6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

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제18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대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제18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

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개편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개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개편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읍·면·동 주민자치

제2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2조(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

제1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 (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2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기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에서 지역선거구를 확정함에 있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증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의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 ③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

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33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② 개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여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총

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2.1.1] 제34조제6호

제35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같은 법 제110조제

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른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시행일 : 2012.1.1] 제36조제3항

제3절 지방분권의 강화

제37조(지방분권의 촉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

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제38조(사무배분의 원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배분은 중복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자치와 자치경찰)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0397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부여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28조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16호, 2010.10.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청(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으로 하여금 기부금품 모집자의 장부 등을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기부금품 모집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07호, 2010. 9.27, 제정】

1. 제정이유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0191호, 2010.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관리사업의 유형 명시(안 제2조)

- 1) 법률에서 규정한 영양관리사업 외에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개정·보급 사업,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안제2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관리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영양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명시(안 제4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섭취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식품의 영양성분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2)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영양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민영양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명시(안 제5조 및 별표)

- 1) 영양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차수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2)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영양사협회 설립 절차 등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1) 영양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양사협회에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2) 영양사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양사협회의 효율적인 설립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대상 업무 및 기관 명시(안 제10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등 영양관리사업, 영양사에 대한 보수교육,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대상 기관은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영양사협회,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 2) 위탁대상 업무 및 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양관리사업, 영양사에 대한 보수교육,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④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7호, 2010. 9.2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368호, 2010. 6. 10.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유효기간을 법률과 함께 연장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으로 지역신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83호, 2010. 9.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급금 충당순서의 구체화(안 제44조의2 신설)

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충당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환급금 충당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사회보험료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마련(안 제64조의3 신설)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과소납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을 각 보험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하여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납부 처리하도록 함.
- 3)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인 배분을 예방하여 각 사회보험 간의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20세 미만의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일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_____	28
2.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_____	33
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_____	38
4.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	_____	46
5.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_____	50
6.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_____	53
7.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_____	64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1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특별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지역 중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 (안 제2조제1호)
- 나.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다음의 자동차로 규정함(안 제3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

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1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가 동상을 건립한 후 해체되거나 재정능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상 등의 건립·이전·교체·보수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나.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장”이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장, 사업소장, 산하 공단 이사장 또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건립주체”란 동상·기념비·조형물(이하 “동상등”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수”란 동상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동상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관리기관장이 공공용지에 동상등의 건립인가 등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미 설치된 동상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동상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민족문화·학문·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제5조(건립위치) 동상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건립되도록 한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연고 여부
2. 건립 예정 장소인 공공용지와 동상등과의 조화여부

제6조(동상등의 제작기준) 동상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형성 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 부지면적) 동상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의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 형 -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전별 심의

제8조(건립인가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동상등의 건립인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동상등의 성분 및 구조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후관리계획서

② 제1항의 건립인가 등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상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상등의 건립 및 이전
2. 동상등의 교체 및 해체
3. 동상등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동상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의원 및 동상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도로 및 공원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동상등의 건립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2. 관리책임자는 동상등을 순찰하여 동상등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동상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0년 8월 일

발 의 자 : 조호권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광주광역시의 평생 교육진흥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 제13조)
- 라.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 제20조)
- 마.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학습자에게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생길 경우 그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1조)

광주광역시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시장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평생교육업무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임기 등) 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된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제14조(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5.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6.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진흥원에는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와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운영자가 협약서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정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진흥원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진흥원장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도·감독한다.

제23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0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0년 8월 일

발 의 자 : 김보현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제 개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구성인원 및 정책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기준, 임기 등을 명시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회의의 구분과 소집방법을 명시함(안 제8조)
- 마. 정책위원의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정책네트워크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책네트워크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운영전

문위원이 맡는다.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이 정책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기) 정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정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정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의회제도 개선분과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월 1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2010. 7. 5.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관광사업자의 관광객유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함(안 제3조).

다.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마. 관광관련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화체육관광국란을 삭제한다.

④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년 6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이 국가, 지방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부각됨에 따라, 도내 지식재산권의 통합 관리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권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둠.(안 제4조)

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7조~제12조)

마. 지식재산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2조)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인간노력에 따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
 - 나.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 다. 식물의 신품종
 - 라. 디자인
 - 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 바. 컴퓨터프로그램
 - 사.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설계
 - 아. 데이터베이스
 - 자. 영업비밀
 - 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

카. 도메인이름

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2. “지식재산권”이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권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기능대학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아.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

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또는 공공연구기관)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장 지식재산위원회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의방법) 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조교수 이상(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조례의 제정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준거의 틀이 되고 동시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기에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어 문맥상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에 맞도록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의 나목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에서 중복 사용된 “또는” 중 앞부분을 “이나”로 바꾸어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로 수정하고, 사목의 “반도체직접회로 및 그 설계”는 “반도체 직접회로와 그 설계”로 자구의 수정이 필요.
- 안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로 조사를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
- 안 제5조제3항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 안 제8조제2항의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으로,
- 안 제14조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에서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가 중복 사용되어 문맥이 원활하지 못한

바, 이를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으로 간략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의 나목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을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의 사목 “반도체직접회로 및 그 설계”를 “반도체직접회로와 그 설계”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을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으로 한다.

안 제14조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 9. 7.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10년 7월 14일, 주민 3,886명이 발의하여 청구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 16)이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10. 9. 7.)에 상정되어 밀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 나.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 나.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가. 무상학교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영·유아의 급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며,
- 나.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 다. ‘지역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청구된 주민발의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2.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3. 그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무상급식 경비 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장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 지원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매년 경비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보육시설의 장은 급식경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70호, 2010. 3.17, 일부개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유아교육법

[시행 2010. 3.24] [법률 제10176호, 2010. 3.24, 일부개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종합 계획,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조달품질관리,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제주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제주도 의회 의원
4.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5. 학부모단체
6. 교원단체
7. 농어민단체
8. 시민단체
9. 영양사 단체
10.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저출산·고령화 대비,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키운다 ——— 75
2. 거의 모든 민원처리, 온라인으로 가능! ——— 76
3. 약품의 효능, 이젠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 81
4. 우수 수업동영상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83
5. 신세대 장병들 IPTV로 KBS '1박2일' 맘대로 본다. ——— 85
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증가·포상 사례 ——— 86
7. 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 89
8.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차질 없이 진행 ——— 91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Ⅹ 저출산·고령화 대비,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키운다.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이인화)과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은 10월 6일(수)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분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국력 증진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국민건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 정책이 **나날이 중요해 지는 현실**에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일선현장에서의 선제적이고 따뜻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간부공무원의 보건복지분야 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에 보건복지분야 과목을 확대 반영**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과 함께 관련 전문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사이버 교육과정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한다.
 -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문화 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도 공무원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중복 개설된 전문과정을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과내용 차별화·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사이버과정 공동 활용**으로 관련 분야 교육콘텐츠 확충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이전대비 경험(10.11월 충북 오송 이전 예정)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양 기관간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인화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의 교류협력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등 보건복지분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관련분야 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거의 모든 민원처리, 온라인으로 가능!

- 2,300종에 달하는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된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500종의 온라인 민원을 개발·확대해, 9월 30일부터는 총 2,300종이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09년 6월 민원서비스선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민원을 1,800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 금년 5월부터 2단계사업을 통하여 9월 30일부터 온라인 민원 500종을 추가로 개통하게 되었다.
 - 이로써, 약 5천종의 민원사무 중 2,300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체 민원 수요의 80.2%에 해당된다.

□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되는 온라인 민원은,

- 민원종수가 가장 많은 제조·개발 분야(89종)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천연자원(77종), 교통·물류(73종), 사회복지(63종) 등 13개 분야로 구분되며,
- 농·어업분야, 장애인 재등록, 의료비청구 등 장애인 관련분야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연금 관련분야, 사회복지시설의 설립부터 폐업까지 복지분야, 대기, 폐수배출 등 환경분야, 문화·레저 분야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화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편의성을 도모했다.

【붙임1】 신규로 개발된 온라인 민원 500종 내용

- 특히, 이번에 개발된 온라인 민원 중 운전면허경력증명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교부는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온라인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금년 말까지 모든 가능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개발(3,000종) 완료하고 스마트폰 민원서비스(건축물대장 등 10종), 원격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 원격지원서비스 :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 민원24 콜센터 상담사가 원격지 민원인 PC에 접속하여 민원처리를 지원

- “온라인 민원이 활성화되어 3000종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개발 완료되면, 연간 6,000여억원의 사회적 비용과 11,000여 톤의 탄소발생량 감축이 가능하여 본격적인 ‘Green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2】 온라인 민원이용에 따른 비용편익(‘09년 기준)

[붙임1]

신규 개발된 온라인 민원 500종

분 류	주요 민원
제 조 · 개 발 (89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
농림수산 · 천 연자원 (77종)	채광휴지인가,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수산물검정신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등
교 통 · 물 류 (73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항공기 감항증명,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등
사 회 복 지 (63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상실신고,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산재보험 직업훈련수당청구,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등
기 업 (46종)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자유무역지역) 등
문 화 · 레 저 (25종)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신문 ·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전용상영관지원신청 등
서 비 스 업 (21종)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등
환 경 (21종)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등
개 인 · 가 정 (17종)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세 금 (13종)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신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국 방 (4종)	한국(월남)전쟁 참전사실 확인신청,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등
부 동 산 (4종)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등
기 타 (53종)	운전면허경력증명, 해기사면허증 갱신 등

[붙임2]

온라인 민원이용에 따른 비용편익

□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 약 6,134억원

항 목	절감액	산 출 기 초
행정기관방문 시간 감소	3,608억	180백만회 × 0.5시간 × 4,000원 (민원실방문 감소횟수 × 방문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행정기관방문 교통비 감소	2,526억	180백만회 × 1,400원 (민원실방문 감소횟수 × 왕복 교통비)

※ 민원실 방문감소 횟수 : '09년 민원발생건수(6억3천만건) × '09년 온라인이용률(31.8%) × 0.9(1회 방문시 다수민원발급에 따른 방문횟수 감소분 고려)

□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 11,554톤

항 목	감축량	산 출 기 초
행정기관방문 교통량 감축	9,269톤	180백만회 / 40명 × 2,055g (민원실방문 감소횟수 / 버스1대당 인원수 × 버스1대당 탄소배출량)
행정기관방문 신청서류 종이감축	2,285톤	200백만건 × 1장 × 11.4g (온라인으로 인한 방문 민원서류 감소건수 × 신청서류 종이수 × 종이1장당 탄소배출량)
필요한 나무수	97만 그루	11,554톤 / 11.9kg (탄소배출량 / 나무 1그루당 연간 탄소흡수량)

※ 온라인으로 인한 방문 민원서류 감소건수 : '09년 민원발생건수(6억3천만건) × '09년 온라인이용률(31.8%)

0 약품의 효능, 이젠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 출입국관리, 외무행정, 식·의약품, 정보보호·보안, 산업안전, 방재관리 등 6개 분야에서 46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9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내부규제개선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과도한 협의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의견수렴, 전문가·관련단체 면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 '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32개 분야 294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IT 기술을 활용한 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 팩스로 신청해야 했던 '출입국 사실증명' 민원을 앞으로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②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민자)이 출산·질병·장애, 원거리 등의 사유로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받은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익혀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수시 귀화 적격심사(필기·면접시험) 면제

- ③ 외국인 중에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으로서 학습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 장애인,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기술·기능·사이버대학 이수자에게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계획이다.
- ④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하로 단기출국 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 ⑤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인이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수령 안내 SMS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의 여권소지자에게 만료사실을 사전안내하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 ⑥ 해외이주자가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경우 소지중인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를 폐지한다.
- ⑦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위조의약품 정보 등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의약정보도서관”을 구축·운영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⑧ 제과점에서 직접 조리·판매하는 빵류 등에 대해 영업점 안에 제조일 표지판을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⑨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정보 등)를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그 결정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기정보접근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⑩ 완구류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 국가별로 유사한 시험·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어 업체의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 시험기관과 외국의 기관이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6차 개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출입국 및 여권관련 국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식의약품·정보보안·산업안전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 “앞으로도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품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우수 수업동영상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의 우수 수업동영상을 교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인터넷 웹사이트 서비스(<http://good.edunet.net/mobile>)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서비스는 우수 강의 벤치마킹을 통한 교원들의 교수학습 방법 공유 및 교실 수업 지도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종전에 우수 수업동영상 웹사이트(<http://good.edunet.net>)에서 서비스 중인 것을 스마트 폰에서도 전국의 수업 잘하는 교사들의 우수수업동영상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우수 수업동영상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분담 개발한 약 1,000여편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우수 수업동영상 제작 교사 공모 등을 통해 우수 교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수업방법, 아이디어 등을 동원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290여편을 제작 계획 중에 있다.

□ 교과부와 KERIS는 “‘우수 수업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교원들이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고, 수업을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교실수업 지도능력 신장 및 교원 간 교수능력 격차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주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㉞ 신세대 장병들 IPTV로 KBS '1박2일' 맘대로 본다.

단체생활로 '1박2일', '제빵왕 김탁구' 등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신세대 장병들이 IPTV를 통해 KBS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된다.

국방부(차관 이용걸)는 제62주년 국군의날인 1일 오후, 국방부에서 KBS(부사장 조대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원호)와 KBS VOD(다시보기) 콘텐츠 무료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방 IPTV 운영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군장병의 병영생활 개선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병영생활관의 모습과 IPTV 운영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5백원에서 1천원씩 하는 KBS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단체생활로 인하여 시청하지 못한 선호 프로그램을 일과후 또는 주말에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영생활관에서 과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국방부는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IPTV를 통해 KBS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문화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KBS는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군장병들이 휴식시간에 비용부담 없이 유익하고 흥미로운 KBS 프로그램을 즐길으로써 사기진작과 건강하고 즐거운 군생활에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 IPTV는 사회와 단절된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융합 및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8월부터 군부대 IPTV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4월부터 내년까지 전군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전방지역, 도서 및 격오지 부대 위주로 2만 9천여대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 3만여 대를 설치하여, 총 5만 9천여대의 IP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증가포상 사례

-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음식점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였음

신고 포상금 34백만원 지급, 과태료 116백만원 부과

- 2010년 4월~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16백만원을 부과하였음
-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 충남 소재 ◇◇예식장이 예식비용 약 14백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건당 최고 한도(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 28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신고 사례가 있음

< 업종별 주요 신고사례 >

- 경기도 소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250만원 부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 수임료 5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함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

■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 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신고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

-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KTX · 아파트 · 언론 등 홍보, 위반사례는 분기별 시리즈로 홍보

< 신고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시행 후 3개월 간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42% 증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금년 4~6월(3개월)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는 병의원, 음식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 현황('10.4월~6월) >

(단위 : 억 원)

구 분	전문직	병의원	학 원	예식장	장례식장
증가율	3.4%	72.5%	14.7%	46.0%	53.9%
증가액	179	5,807	506	358	332

-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 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⑩ 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청은 '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 하였음

○ 연도별 추징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 도	건 수	증여재산가액	추징세액
합계	12,681	28,423	10,447
2010년	3,095	5,469	1,679
2009년	808	2,506	1,029
2008년	5,389	12,169	5,035
2007년	1,379	5,180	1,557
2006년	2,010	3,099	1,147

* 2010년 : 상반기까지 실적임

○ 주요 주식 명의신탁 유형

-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임

※ 주식 명의신탁 이유 ?

-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과점주주 : 법인주식의 50%초과 보유자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④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차질 없이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하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10년도 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전원에게 차질 없이 진행한다.”며

-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일부지역에서는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당초 ‘10년도 예산 324억(국고 245억, 지방비 79억)을 확보하여 총 55,763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 2006년 4월부터 시작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10년도 3인가구 기준 168만9천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친서민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신생아가 1인일 경우 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기준으로 총 서비스 금액 64만2천원의 비용이 산정되고
- 가형 해당자는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55만원을,
나형 가구는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59만6천원을 받게 된다
- * 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 ~ 50%이하
나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로서 총 서비스금액 118만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08만8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13만4천을 받게 된다.
- 3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총 서비스금액 174만7천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65만5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70만1천원을 받게 된다.

<참고 1>

6. 2 지방선거 선거비용 수입·지출상황

= 수입·지출보고서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총 지출액은 7,012억 7,300만원으로 그 중 5,354억 1,30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고 1,658억 6,000만원이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기탁금,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 선거비용지출 금액을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482억 8,100만원, 자치구·시·군장선거는 904억 8,300만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737억 4,6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1,843억 9,400만원, 교육감선거는 802억 9,40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362억 8,900만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219억 2,600만원으로 모두 5,354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선거별 후보자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8억 7,8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15억 2,600만원)의 56.2%, 자치구·시·군장선거는 1억 2,1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1억 6,500만원)의 73.3%,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4,2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5,300만원)의 79.2%,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3,2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의 71.1%를 각각 지출하였다.

한편, 교육감선거에서는 10억 8,5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16억 7,300만원)의 69.4%을 지출하였고 교육의원선거에서는 1억 3,5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2억 4,400만원)의 54.4%를 지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번 선거에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었던 시·도지사선거를 보면, 후보자 53명이 후원회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165억 7,100만원으로 후원회당 평균 3억 1,3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자치구·시·군장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보면, 자치구·시·군장선거에서 후보자 444명이 후원회

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183억 3,000만원으로 후원회당 평균 4,100만원을 모금하였고, 교육감선거에서는 후보자 60명이 후원회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45억 1,300만원으로 후원회당 평균 7,500만원을 모금하였다.

▶ 정당별 후보자 후원회 모금총액을 보면

시·도지사선거에서 한나라당(15개) 88억 4,600만원, 민주당(13개) 35억 3,700만원, 자유선진당(3개) 9억 3,700만원, 민주노동당(5개) 1억 6,500만원, 진보신당(9개) 6억 2,700만원, 국민참여당(3개) 14억 5,600만원, 미래연합(1개) 2,600만원, 평화민주당(2개) 1억 1,200만원, 무소속(4개) 8억 6,5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시·군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131개) 87억 1,500만원, 민주당(109개) 46억 1,200만원, 자유선진당(17개) 6억 8,300만원, 민주노동당(16개) 4억 6,000만원, 창조한국당(1개) 200만원, 진보신당(7개) 1억 6,200만원, 국민중심연합(2개) 5,600만원, 국민참여당(13개) 2억 2,700만원, 국제녹색당(1개) 400만원, 미래연합(9개) 8,200만원, 친박연합(2개) 700만원, 평화민주당(7개) 5,400만원, 무소속(129개) 32억 6,6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공개한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내역을 공개한 것이며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기탁금·정당활동비·사무실임차유지비 등 선거비용으

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감액되고, 누락된 비용이 있거나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 및 위법선거운동사태가 밝혀지면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하게 되므로 공개한 선거비용의 지출 보고액에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394억여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지난 7월 30일 지급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발견되면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http://cn.election.go.kr>]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저자명 : 김은성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출판년 : 2009년

페이지 : 271

가 격 : 12,000원

진정성을 전달하는 버락 오바마, 솔직담백하게 대화하는 오프라 윈프리, 자기연출이 뛰어난 히틀러, 명료하고 압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링컨, 청중을 위한 쇼를 하는 스티브 잡스 등 소통의 달인들에게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비법을 이 책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순간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오바마의 연설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저자는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에서 오바마가 사람들에게 진실성과 진정성을 느끼게 했고, 공화당 캠프에서 비방을 일삼을 때조차 ‘경쟁자를 공격하기보다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난 후 논리적으로 그의 정책에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잘생긴 외모와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통해 흑인 특유의 리듬감을 살렸으며, 적절한 제스처를 취하고, 진취적인 드레스를 코디하는 등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합한 것도 그만의 장점으로 돋보였다고 말한다. 오바마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고, 명료하고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 듣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당대 최고의 연설가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오프라 윈프리 역시 20년 넘게 자신의 쇼를 진행하면서 미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저자는 그녀가 토크쇼에서 어렸을 때 당했던 성폭행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등 초대 손님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자기노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한다. 초대 손님이 말을 시작하면 눈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는 등의 적절한 스킨십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오프라는 결국 솔직한 소통법을 통해 공감을 넘어 초대 손님과 시청자들의 행동까지 변화로 이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오바마나 오프라 모두 개인을 넘어 온 국민과 소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솔직한 자기노출과 진정성이 두 사람 ‘소통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소통의 법칙

많은 통신기기가 발달되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불통’의 사회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돌아서게 하는 것 또한 순식간이며 사소한 말 한마디로 천하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수록 사람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이 인맥도 잘 형성하고, 성공하기 마련이다.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에서 소개된 소통의 달인들이 제시하는 ‘7가지 소통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공감의 법칙(Sympathy)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라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은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2. 경청의 법칙(Listening)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통합의 법칙(Unification)

언어적 요소와 몸짓언어를 활용하라

상대방과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가볍게 제스처를 취할 때 서로 교감할 수 있다.

4. 스토리텔링의 법칙(Story-telling)

이야기체로 말하라

핵심 키워드를 선별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할 때 상대방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5. 명료성의 법칙(Clarity)

명확하고 쉽게 말하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명확하고 쉬운 단어로 말할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

6. 반복과 자극의 법칙(Repetition&Stimulus)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라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고, 임팩트 있는 정보로 자극할 때 상대방은 집중한다.

7. 진정성의 법칙(True heart)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이야기하라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의 정 정 보

- ❖ 발행일 : 2010년 10월 11일
-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법제자료담당관실
법제자료담당관 : 홍민표
법제자료담당 : 조남명
자 료 편 집 : 최성민, 신의식, 안가영,
박광일, 이종섭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606-5029 / 팩스 (042)606-5029